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1417호, 2026. 2.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직무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활동 유형을 구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8. ~ 2026. 4. 27.)

3) 행정규제 : 생 략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 법 제5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무활동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 법 제5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무활동을 말한다.